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신장식의원·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8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정혜경 · 민병덕 · 윤종오

김종민·조 국·이기헌

조계원 · 김선민 · 서왕진

박은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교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전면 제약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도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

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교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및 제3조 삭제).

법률 제 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가공무</u>	제1조(목적) <u>「노동조합</u>
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	및 노동관계조정법」
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u><삭 제></u>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	
<u>여서는 아니 된다.</u>	